성보장학생 운영규정(대학생)

제 1 조 (대상)

전국의 대학교 재학 중인자를 대상으로 학교에 편중치 않고 균등하게 추천받는다.

제 2 조 (장학생선정)

아래 추천요강에 의하여 학교총(학)장이 추천한자를 본 법인에서 서류심사를 거처 선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한다.

제 3 조 (장학금지급)

1)지 급 액 : 등록금의 일부(이사회의에서 결정된 금액)

2)지급방법 : 학기별로 소속학교의 장을 경유한다.

단, 본 장학법인에서 장학증서 전달식을 거행할 경우 선발된 학생을 소집하여 직접 전달 할 수 있다.

3)장학금지급기한은 한학기로 한다.

제 4 조 (장학금지급중지)

1)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지급을 중지한다.

가. 학업을 태만히 하여 추천당시 성적 및 가계평가에 미달 되는 자

나. 소속학교에 퇴학, 정학, 전학, 징계처분을 받은 자

다. 휴학.군입대,질병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한자

라. 타 장학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학비감면 또는 보호자가 자녀학비보조혜택을 받게 된 자

2)1)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학교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본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.

- 부 칙 -

(시 행 일) 이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(시 행 일) 이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성보장학회 추천요강)

제 1 조 (추천대상자)

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의 자를 총(학)장이 추천 한다

1)향학열이 높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

2)직전성적이 평점 3.0이상으로서 경제적사정이 어려워 학비보조가 필요한자 (다문화 가정 학생 적극 추천 요망합니다.)

3)다른 장학금 또는 이와 유사한 학비감면 혜택 또는 보호자가 자녀학비보조 혜택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.

제 2 조 (추천절차등)

1)구 비 서 류

가. 장학금수혜지원서(사진부착)	1통.
나. 학교총(학)장 추천서	1통.
다. 성적증명서(직전학기분포함)	1통.
라.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	1통.
마.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	각1통.
바. 학교통장사본(장학금수령통장)	1통.

2)서 류 제 출 처

수 신 : 재단법인 성보장학회

주 소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6, 지상4층(여의도동,유화증권빌딩)

연락처 : 02)3770-0006

3)제 출 기 한

2017년 07월 21일 (도착기준)

[서식 1호]

추 천 서

1. 학 교 명

2. 성 명

3. 학교장, 총(학)장의 의견

가. 생활태도(인품, 교우관계, 학교활동, 취미 등

나. 연구태도(학업성적, 특기사항 등)

다. 가정상황(가정의 경제정도. 보호자 직업 및. 수입상황 (학비조달 등

상기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학구의욕이 왕성하나 경제적사유로 수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성보장학금 수혜 대상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추천합니다.

서기 년 월 일

추천자 직위 성명 ㊞

재단법인 성보장학회 귀중

[서식 2호]

장학금 수혜지원서

1. 성 명	(한글) (한문)			사 진
2. 생년월일	서기 년 월 일	3. 성 별 :		
4. 학 교 명	학년			
5. 등록기준지				
6. 주 소	보호자 전화			
	본 인 전화			
7. 출신학교	. . . 초등학교 졸업	주거관계	자택. 전세. 월세	
	. . . 중학교 재학 졸업		하숙. 자취	
	. . . 고등학교 재학 졸업		기숙사.	
	. . . 학교 재학 졸업		기타()	

8. 가족사항

관계	성 명	연령	직 업(구체적으로)	관계	성 명	연령	직 업(구체적으로)

9. 재산상황

재산	부동산	건물 평. 대지 평. 전답 평
	동 산	원
전가족 월 수입액		원

본인은 귀재단 학비보조 장학생이 되고자 소정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.

서기 년 월 일

지 원 자 ㊞

보 호 자 ㊞

재단법인 성보장학회 귀중